

상법 개정안 중 주요 내용

법무부는 2013년 7월 17일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의견제출기한은 2013년 8월 23일). 이번 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절차,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주주총회의 활성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금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개정안 제406조의2, 제542조의6 제6항)

“대표소송”이란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송입니다(상법 제403조). 이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자회사 이사의 임무해태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회사나 그 주주 또는 모회사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모회사 주주의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위 개정안은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모회사 관계에 있어 지배구조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였습니다. 한편 상법 제342조의2 제3항은 자회사 또는 모회사가 흡산하여 지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회사, 즉 손자회사도 자회사로 보고 있으므로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와 손자회사 사이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사회의 업무감독 기능 강화(개정안 제415조의2 등)

현행 상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감사를 둘 수 없고(제415조의2 제1항)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로 구성되므로(제415조의2 제2항) 업무집행 및 감독 기능이 모두 이사회에 집중되어 자기감독의 모순이 발생하고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한편 대표이사에 갈음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을 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집행임원의 선임여부는 회사의 선택사항이었습니다(제408조의2 제1항).

위 개정안은 집행임원은 경영에 집중하고 이사회는 그 업무감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집행임원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개정안 제415조의2 제1항), 집행임원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408조의2 제4항).

3.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개정안 제542조의7)

현행 상법에 의하면 집중투표제는 회사의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고(제382조의2 제1항, 제542조의7 제1항), 이에 따라 실 무상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위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회사의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채택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개정안 제542조의7).

집중투표제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기업의 내부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수 있고 경영권 위협 요소로 기능 할 수 있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방식 도입(개정안 제542조의12)

현재 감사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나(상법 제409조 제2항), 감사에 갈음하는 감사위원은 선출된 이사 중 에서 선임하고 이사 선임시에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의결권 제한 규정이 배제되어 감사위 원의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위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 으으로써 선임 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는바(개정안 제542조의12), 이는 선임단계 에서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이 충실해지도록 하고,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 지입니다.

5.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개정안 제542조의14)

현재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는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상법 제368조의4)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었 습니다. 이에 따라 위 개정안은 주주총회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건전한 경영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주주의 수 이상의 상장회사로 하여금 전자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542조의14)

위와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회사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소수주주의 권 한 보호가 강화될 것이므로 기업들은 이에 대비하여 그 지배구조를 재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위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재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계의 반발이 거세고, 의견제출 및 수렴, 규제 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개정안이 수정될 수 있고 국회의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재영 변호사

TEL. 02 316 4350

E-Mail. jychang@shinkim.com
